

## 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4. 2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4. 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1999. 4. 1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국장 김인규)

가. 제안이유

-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복사골부천, 복사골시정소식, 팜플릿, 홍보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 부천시 세외수입을 중대 지방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제정을 도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업광고대상 : 복사골부천, 복사골시정소식, 홍보책자, 팜플릿,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10인 이내)
- 광고료 수입 : 세외수입으로 입금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상업광고 대상 중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통상적으로 주방 또는 후미진 곳에 방치하는데 광고효과가 있습니까?</p> <p>○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p> <p>○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p> <p>○ 위원회의 구성을 공무원으로 편중하지 말고 좀더 폭넓게 의원 1인과 전문가를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요?</p>	<p>○ 부천시에서 생산되고 주민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는 위생공사에서 홍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서울 강북구, 도봉구,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p> <p>○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심의가 아닌 월 1회 정도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북사골부천은 분기별 1회, 북사골시정소식지는 월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p> <p>○ 10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 중 광고에 관한 전문 지식인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위원회 위원 중 4명을 광고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며 가결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130호
의결년월일	99. 4. 15 (제70회)

제출년월일 : 1999. 4. 12

제 출 자 : 기획재정위원장

□ 수정이유

-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 위원회 구성을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었을 경우 야기되는 문제점을 생각하여 일정 비율의 위원은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수정함.

□ 주요골자

-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세외수입 총괄 담당국장이 되며, 예산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 담당부서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 각 국의 주무과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를 공무원과 광고에 관한 풍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4인을 포함시킴으로써 폭넓은 지식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수정안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본문중

제②항 내용중 “예산부서”를 “소관부서”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③항 내용중 “자람”을 “자 4인을”로 하며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으로 한다.

제④항 내용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세외수입 총괄 담당국장이 되고, 예산부서의 장 및 각 국의 주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세외수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u>소관부서</u> ..... <u>위원</u> ..... .....

<p>③시장은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③..... .....자 4인을.....하여야 한다.</p>
<p>④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④위원..... .....</p>

[수정안 포함]

### 부천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홍보물 또는 행정자료에 대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1. 복사골부천, 복사골시정소식
2. 홍보책자, 팸플렛
3. 쓰레기봉투
4. 기타 시에서 발행되는 자료로서 부천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홍보물 또는 행정자료

제3조(광고주 모집) 시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제4조(광고내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파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기타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제5조(광고료)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물에 게재한 광고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유료광고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세외수입 총괄 담당국장이 되고 소관부서의 장 및 각 국의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세외수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시장은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소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시 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2조(광고의 취소) 시장은 광고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게재 결정을 받은 때
2.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광고된 내용이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판명된 때
3. 기타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세입증대 징수포상금 지급) ①광고료 수입으로 시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 및 민간인은 부천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입증대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광고료 수입금액의 5%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광고료 및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